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협회지 제 69-1호 2003년 8월 20일(수)

제목1: ☐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간담회 개최 연기

축산물위생처리협회의 간담회를 2003년 8월 06일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각 기관의 휴가로 인한 업무지연(공정거래위원회)과 교통난으로 간담회를 이달말경으로 연기하였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답변이 오는대로 바로 간담회 일자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제목2: 돼지 이산화탄소 실신기 개발(전살기 대체)

-울돼지고기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소장 김경남)는 (주)케이텍과 공동으로 이산화탄소 (CO2) 실신기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축산기술연구소가 개발한 이산화탄소 실신기는 기존의 전기를 이용하는 장치와는 달리 혈중 산소분압을 이용하여 마취시키는 방법으로 시간당 6백~1천1백두 정도를 처리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도축전의 돼지를 일정수준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유지하고 있는 밀폐된 방을 일정시간동안 통과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스트레스 없이 실신시키는 원리다.

축산연은 이산화탄소 실신기를 이용할 경우 전기실신방법에 비하여 골격의 파손, 고기조직내 출혈 방지, 후지경련이 없으며 특히 물돼지고기(PSE육)의 출현률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이미 선진국 등에서는 널리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축산연은 이번에 개발한 새로운 실신 방법을 통해 수출중단 등으로 국내산 돼지고기의 품질이 저하된 점을 감안할 때 국내산 돈육의 품질향상을 통한 소비확대는 물론 나아가서는 수출 재개시 가격 경쟁력 제고 등 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축산연 축산물이용과 이종문 과장은 “급후 규격돈 생산과 도축장에서의 이산화탄소 실신기의 효율적 운용이 이루어진다면 저품질 돈육발생을 선진국 수준으로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발췌: 축산신문

제목3: 축산물등급판정소, 돼지 등급판정기준 공청회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정동홍)는 돼지도체 등급판정세부기준(안)을 마련과 관련,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0일 오후 3시 등급판정소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안의 주요골자는 등급판정방법을 인력등급판정과 기계등급판정으로 구분하고, 인력등급판정기준을 도체중과 등지방 두께를 등급별로 각각 박피도체 2kg과 2mm(탕박도체 도체중량 4kg)씩 상향조정하는 것 등이다.

발췌: 한국농어민신문

-지난주 WORM바이러스 피해로 복구하느라 협회지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391-9767, FAX 031-395-6661
경기도 군포시 당동 424-6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협회지 제 69-2호 2003년 8월 20일(수)

제목4: 돼지고기 부분육 등급표시·시범사업 실시

-돼지고기 부분육 등급표시 및 상장경매가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정동홍)는 지난 8일 돼지고기 부분육 등급표시 시범사업에 관한 회의를 열고 이르면 오는 10월 중에 대전 대양식품에서 우선적으로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돼지고기의 부분육의 규격출하를 촉진하고 부분육 경매에 의한 유통개선을 목적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돼지고기 등급은 상위등급(A,B등급)과 하위등급(C,D등급)으로 등급표시를 간소화하고 돼지가격에 성별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성별은 수퇘지를 제외한 암, 거세돼지로 표시하기로 했다. 또한 등급별, 성별로 구분된 부분육은 등급판정사가 부분육확인 신청서와 생산일지를 확인하는 등 등급표시 확인절차를 거쳐 포장형태로 상장하게 된다.

김철중 등급판정소 운영팀장은 “쇠고기의 경우 부분육 상장경매가 이뤄지고 있으나 돼지고기의 경우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비한 사항이 많다”며 “앞으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동성 양돈협회 상무도 “돼지고기의 부분육이 실제로 많이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도입이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종문 축산기술연구소 축산물 이용과장도 “미국, 일본 등 축산 선진국에서는 이미 돼지고기 부분육 등급표시가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수입 축산물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는 만큼 향후 위생, 유통의 투명성 등 보완할 점들을 충분히 보완해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발췌: 축산신문

제목5: HACCP 미적용 작업장 79개

지난달 1일부터 전국 162개 작업장에 대한 HACCP의무적용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79개소가 HACCP를 적용하지 않자 농림부가 시·도를 통한 강력한 행정처분 시행을 천명하고 나섰다.

농림부는 도축장들의 시설개보수자금, 컨설팅소요자금 지원 등 조기정착을 서둘러왔다.

그러나 전국 162개 소·돼지·닭 도축장에 대한 전면적인 HACCP의무적용 한 달이 지나도록 전체 작업장의 절반정도 사업장들이 HACCP를 적용하지 않아 실태조사를 통한 강력한 법 집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림부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에 의거 미 적용사업장에 대한 운영실태조사를 이달 말까지 끝내고 관련법 규정에 의거 미적용사업장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역원에 HACCP적용사업장 지정신청을 하지 않은 도축장 가운데 자체 위해요 소증점관리기준을 운용치 않은 도축장에 대해 1개월 영업정지, 이를 운용치 않는 도축장은 경고조치가 취해진다. 4차 이상 위반의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6개월 또는 영업취소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상진 농림부 축산물 위생과 계장은 “정부는 5년 전부터 HACCP제도 정착을 위해 꾸준히 지원해왔으며 일부 미적용 사업장에 대해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시·군을 통한 적용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췌: 한국농어민신문